의안번호	
의 뢰 인	정을호 의원
회 답 일	2024.08.13.
추계번호	24C2609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(정의)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“학교”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마목의 경우에는 제2장의 적용에 있어서는 학교로 보지 아니한다. 마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	의무규정
2	안 제41조의2 (공제사업의 안내)	(제1항)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 (제2항)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「학교안전법」 상의 “학교”에 포함되어 시·도별 학교안전공제회 사업이 확대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[1)]

1) 안 제41조의2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발생 시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게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안내할 경우 안내 방법(전화, 문자, 유인물 등)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, 기관 기본경비 내에서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하였음

○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,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입으로[2)3)]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,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,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수행[4)]

[표 1] 최근 5년간 시·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입 지출 총액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세 입							세 출			
	전년도 이월금	공제료	보조금	기금 운용 수입	수익 사업 전입금	잡수입 구상 회수금 등[1)]	계	공제 급여	학교 폭력지원 상담치료	인건비 운영비 등	계
'19	837	371	55	11	13	9	1,296	393	5	102	500
'20	796	420	73	15	14	9	1,326	271	5	102	378
'21	948	415	74	8	15	13	1,473	292	5	98	395
'22	1,078	439	34	12	13	17	1,593	368	7	108	483
'23	1,104	479	10	22	17	20	1,652	515	11	125	651

주: 1) 상담치료, 학교폭력보조금 포함
자료: 교육부

❑ 다만, 개정안에 따라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는 경우의 학교안전공제 보조금 증가 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움

○ 학교안전공제에의 보조금 증가 여부 및 그 규모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결정

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공제회의 재정) 공제회의 재정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.

4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8조(공제회의 사업)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
2.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
2의2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,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
3.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
4.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·홍보
5.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
6.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
7.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
8.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하는 공제료와 공제급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, 이를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움

- '24년 현재 유치원 및 초·중·고교 등의 경우 각 시·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의무가입 대상이나, 대안교육기관은 '학교안전공제중앙회'의 "청소년활동안전공제"에 '임의가입' 대상
- 공제료도 시·도의 학교안전공제의 경우 유치원 3,600원, 초등 4,700원, 중등 11,300원, 고등 16,100원이나, 청소년활동안전공제의 경우 학생 1인당 10,260원('23년 기준)
- 참고로 '23년 기준 학교안전공제에는 20,539개교의 5,769,597명이 가입되어 있으나,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는 213개 기관의 12,365명이 가입되어 있음
- 이에 개정안 시행 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등이 가입하게 될 공제의 사업자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시·도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될 수 있고, 관련 공제료 수입·공제급여 및 보조금 규모 변경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규모에 대한 예상이 어려움
- [참고자료] 학교안전공제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비교

❑ 따라서 개정안은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학교안전공제와 청소년활동안전공제 비교

구분	학교안전공제	청소년활동안전공제
목적	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·적정하게 보상	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
사업자	각 시·도 학교안전공제회	학교안전공제중앙회
가입자 의무여부	(의무가입) 유치원 및 초·중·고, 특수학교,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	(임의가입) 청소년수련시설의 장
피공제자	학생, 교직원, 교육활동참여자	수련시설 장의 관리·감독하에 수련활동을 하는 자
공제료 (`23년)	유(3,600원), 초(4,700원), 중(11,300원), 고(16,100원)	학생 1인당 10,260원
보장범위	교육활동 중 신체 상해 및 특정 질병(일사병, 이물질 섭취 및 접촉, 외상으로 인한 질병 등)	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물 피해 및 피공제자로 인한 제3자의 인적·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
보상한도	없음	있음(대인사고 1사고 당 10억원 등)
가입현황 (`23년)	20,539 개교(5,769,597명)	213개 기관(12,365명)[1]

주: 1) 중앙회 가입 대안교육기관 :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기관
자료: 교육부